

2014년

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등의 교육을 위한 질의·응답집

'14. 01.

식품의약품안전처
바이오생약국
화장품정책과

Q A 1 교육대상의 범위 및 교육이수에 대한 사항은 어디에 있나요?

- 대상 : 「화장품법」 제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제조업자, 제조판매업자 및 제조판매관리자
- 교육이수 : 「화장품법」 제5조 제4항,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및 제4항, 「화장품 법령·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」 제7조

Q A 2 교육이수 시간 및 기간

- 「화장품법 시행규칙」 제14조 제1항에 따른 제조판매관리자의 경우 매년 4시간 이상, 8시간 이하 교육을 이수해야 함
- 「화장품법 시행규칙」 제1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른 제조업자 또는 제조판매업자는 교육이수 명령을 받고 6개월 이내에 4시간 이상, 8시간 이하 교육 과정을 이수하여야 함
- 해당 기간내에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됨

Q A 3 교육 미이수자 처분

- 제조판매관리자 등이 해당기간 이내 4시간 이상 8시간 이하의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「화장품법」 제40조 제1항 제4호, 「화장품법 시행령」 제16조 및 [별표2]에 의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
- * 과태료 부과대상은 교육명령대상자임

Q A

4

당해 연도 교육이수기간에 2회 교육을 받은 경우, 다음 연도 교육이수기간에 교육이 면제되는지?

- 제조판매관리자는 **매년** 4시간 이상, 8시간 이하의 교육을 받아야 하므로, 1년에 2회 이상 교육을 이수해도 무방하나, 추가로 받은 교육이 다음 연도에 이월되는 것은 아니므로 다음 해에 교육을 다시 받아야 함

Q A

5

교육은 업종별로 해당하는 협회에서 받아야 하는지?

- 4개 기관(협회 등)이 교육실시기관으로 지정되었으나, 회원사만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아니므로 어느 교육실시기관에서 받아도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함

Q A

6

제조판매관리자 교육시간의 일부를 대체할 수 있는 교육 과정이 있는지?

- 현행 화장품법령상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등 교육과 관련하여 4개의 교육실시기관에서 개설한 교육과정을 인정하고 있음

Q A

7

교육 이수결과를 업체에서 식약처에 보고해야 하는지?

- 「화장품법」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에 의한 제조판매관리자의 경우에는 교육실시기관에서 교육실적 보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업체에서는 교육이수 후 별도로 결과 보고를 할 필요는 없음
- 「화장품법」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1호 내지 4호에 의한 제조업자 또는 제조판매업자는 교육명령을 받고 6개월 이내에 교육이수 결과를 보고해야 함

Q A 8 교육을 제조판매관리자 소속회사 직원이 받았을 경우 인정되는지?

- 제조판매관리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정 의무교육이므로 반드시 대상자 본인이 교육을 받아야 함.

Q A 9 제조판매업자가 외국인일 경우 교육이 가능한지?

- 통역자와 함께 교육참석

Q A 10 행정처분으로 교육대상자가 되었을 때, 제조판매업자와 제조판매관리자가 겸직하고 있다면 교육은 한번만 받아도 되는지?

- 제조판매업자와 제조판매관리자의 교육은 목적이 다르므로 별도로 받아야 함
 - ※ 「화장품법 시행규칙」 제14조 제1항에 따른 제조판매관리자는 「화장품법령·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」 제7조 제2항에 따라 매년 교육을 받아야 함
 - ※ 「화장품법 시행규칙」 제14조 제1항 제1호~제4호에 따른 제조업자 또는 제조판매업자는 「화장품법령·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」 제7조 제3항에 따라 교육이수명령을 받고 6개월 이내에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보고하여야 함

Q A 11 휴업 중인 업체에 대한 제조판매관리자의 교육 이수 여부

- 제조판매관리자는 업체의 휴업이 전 교육기간(1.1.~12.31.)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, 교육을 받아야 함. 휴업이 교육기간인 1년(1.1.~12.31.)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년도는 제외

Q A 12 제조판매관리자가 되기 전 받은 교육의 인정여부

- 현재 교육실시기관에서는 제조판매관리자가 아닌 자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음
- 제조판매관리자가 아닌 자가 교육을 수료한 후 신규(변경) 제조판매관리자가 된 경우 교육을 받은 당해연도에는 추가로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됨

Q A 13 제조판매관리자가 타사에서 받은 교육의 인정여부

- 제조판매관리자가 교육을 이수한 후 이직하여 타사의 신규(변경) 제조판매관리자가 된 경우 교육을 받은 당해연도에는 교육이수로 인정함

연말(12월)에 제조판매업 등록 또는 제조판매관리자의 신규(변경) 등록을 완료하였으나, 당해연도에는 더 이상 교육실시기관의 교육과정 일정이 없어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

- 12월에 신규(변경) 등록을 완료하는 경우 당해연도 교육 면제
 - 다음 년도부터 매년 제조판매관리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
- * 관련근거 : 「화장품법」 제5조 제4항,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및 제4항, 「화장품 법령·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」 제7조

Q 15 교육실시기관과 교육일정은 어디에서

· 4개 교육실시기관은 아래와 같음

연번	교육실시기관 명칭	홈페이지 (대표번호)	소재지
1	(사)대한화장품협회	www.kica.or.kr (02-785-7984~5)	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50, 906호(여의도동, 금산빌딩)
2	(사)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	www.kpta.or.kr (02-6000-1862)	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11, 1801(삼성동, 무역센터)
3	(재)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	www.kcii.re.kr (031-372-1325~6)	경기도 오산시 가장동 84-5 가장2산업단지내
4	한국보건산업진흥원	www.khidi.or.kr (043-713-8000~5)	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

* 교육일정은 기관 홈페이지 참조 및 담당자에 문의할 것